

건강 증진법 · 도교도 조례 대상 시설의 포인트

■부지 내 금연 | 옥내 금연(흡연 구역 설치 불가능)

옥외에 특정 옥외 흡연 구역 설치 가능

☐ 학교 · 병원 · 진료소 · 아동 복지 시설 · 행정 기관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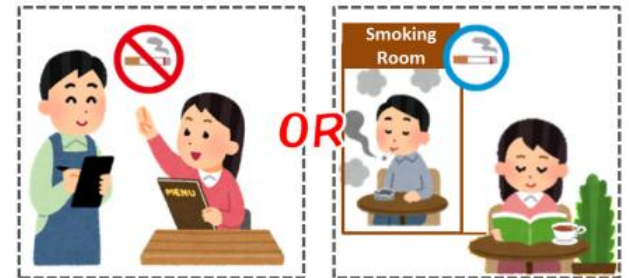
※단 유치원, 보육소, 초등학교 · 중학교 · 고등학교는
옥외에도 흡연 구역 설치가 불가능(노력 의무)합니다.

※버스 · 택시 · 비행기는 차내(기내)에서 금연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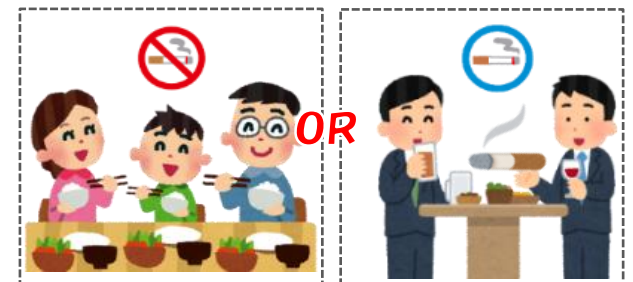


■옥내 금연 | 금연 또는 흡연 전용실 · 가열식 담배 전용 흡연실 설치

☐ 2명 이상의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 등
사무실, 공장, 호텔, 여관, 여객선, 여객 철도,
종업원이 있는 음식점



※종업원이 없는 음식점은 사업자가 옥내 금연 또는
흡연을 선택합니다.



시설 유형(개요)

 로 둘러싼 부분이 도쿄도 조례의 규정

	시설 유형	건강 증진법 · 도쿄도 조례
제1종 시설 외	보육소,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등	부지 내 금연 (옥외에 흡연 구역 설치 불가능※노력 의무)
	대학	부지 내 금연 (옥외에 흡연 구역 설치 가능)
	병원, 진료소	
	아동 복지 시설(위의 보육소 등 제외)	
	행정 기관의 청사	
	버스, 택시, 비행기	
제2종 시설 외	위 이외에 2명 이상의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 등 (예) 사무실, 공장, 호텔, 여관, 노인 복지 시설, 운동 시설, 여객선, 여객 철도, 종업원이 있는 음식점	원칙적으로 옥내 금연 (흡연 전용실, 가열식 담배 전용 흡연실에서만 흡연 가능)
	종업원이 없는 음식점	종업원을 고용하고 있지 않은 경우는 금연 · 흡연을 선택할 수 있다. (=도쿄도 지정 특정 음식 제공 시설)

※흡연실을 설치한 경우 흡연실 출입구와 매장 출입구에 적절한 안내 표지를 설치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음식점은 금연인 경우에도 매장 출입구에 금연 안내 표지를 설치할 의무가 있습니다.

시설 유형(상세)

■ 특정 시설: 제1종 시설, 제2종 시설, 흡연 목적 시설

제1종 시설	(a) 학교, 병원, 아동 복지 시설, 기타 간접흡연에 의해 건강을 해칠 우려가 높은 사람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 (b)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의 행정 기관의 청사 (행정 기관이 그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사용하는 시설 한정)
제2종 시설	제1종 시설 · 흡연 목적 시설 이외에 2명 이상의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 전체
도쿄도 지정 특정 음식 제공 시설 (도쿄도 조례 제2조의 6)	음식점 · 카페 등 중 다음 4가지 요건을 충족시키는 시설 ①2020년 4월 1일 시점에 이미 영업, ②좌석 면적 100㎡ 이하, ③중소기업(자본금 액수 또는 출자 총액이 5천만 엔 이하) 또는 개인 경영, ④종업원(노동 기준법 제9조에서 규정하는 노동자※)을 고용하고 있지 않은 시설 ※급여를 받는 사람(단 동거 친족 등은 제외)
흡연 목적 시설	(a) 옥내 공중 흡연 구역 (b) 흡연을 주목적으로 하는 바(Bar), 스낵 주점 등 ※흡연 구역을 제공하는 것이 주목적이면서 담배의 대면 판매(출장 판매 포함)를 하고 있고 「통상 주식으로 인정되는 식사」를 주로 제공하지 않는 음식점 등을 가리킨다.일 반적인 이자카야, 레스토랑 등은 해당하지 않는다. (c) 매장 내에서 흡연 가능한 담배 판매점 ※담배 또는 흡연 기구를 판매하고 있고(담배는 대면 판매 한정) 설비를 설치하여 고객이 취식하게 하는 영업을 하고 있지 않아야 한다.

■ 특정 옥외 흡연 구역: 제1종 시설의 옥외 구역의 일부 중 관리 권원자에 의해 금연 구역으로 구획되고 규칙에서 규정하는 간접흡연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 (※)가 취해진 옥외 구역

※특정 옥외 흡연 구역에서의 간접흡연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 【건강 증진법 시행 규칙 제15조】

- ①흡연 가능 구역임을 안내하는 표지를 설치해야 한다.
- ②제1종 시설 이용자가 평소에 출입하지 않는 구역에 설치해야 한다.